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양구군, 인제군

내 용

1.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·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창의성·예술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“12-가”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

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 밖에 남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찰 처리하고,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, 재공고입찰에 부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,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, 입찰참가자격·가격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

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.

이에 따라,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공고 입찰 결과 참가자가 1인뿐이더라도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고, 유찰되면 재공고입찰을 부쳐야 하며,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이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,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.

또한, 행정자치부(○○○○과)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 “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회 유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”하도록 유권해석 및 회신하고 있다.

강원도 ○○군에서는 2015. 11. 16. ○○○○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 입찰 공고 하였으나,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재공고 하였으나,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.

○○○○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여야 함에도,

위 관서에서는 위법·부당하게 관련법령 검토 등도 없이 2015. 11. 16. ○○○○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(재)○○○○○○과 수의 계약(171,000,000원) 체결한 사실이 있다.

또한 [표 1]과 같이 5개 군 11건에 대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여야 함에도, 위법·부당하게 법령검토 등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.

2. 예정가격 미 작성 등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,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,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, 동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, 이를 밀봉하여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야 했다.

그런데, 위 관서에서는 2015. 11. 16. ○○○○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(재)○○○○○○○○과 수의계약(171,000,000원)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,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없이 업체의 금액에 의존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또한 [표]와 같이 5개 군 11건에 대해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,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없이 업체의 금액 등에 의존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

연번	시군명	사업명	최초 입찰일자	유찰	수의계약 현황			담당자			비고
					업체명	계약금액	계약일자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	
1	○○	제11회 ○○○○축제 특설무대 설치·운영 용역	15.08.27	2회	○○○○	90,200,000	15.10.02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2	○○	○○○○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	15.11.16	2회	(재)○○○○ ○○○○	171,000,000	15.12.30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3	○○	○○ 베이스볼 테마파크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용역	16.01.08	2회	주)○○○○ 베이스볼 파크	141,356,830	16.05.30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
연 번	시군 명	사업명	최 초 입찰일자	유 찰	수의계약 현황			담당자			비고
					업체명	계약금액	계약일자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	
4	○○	'15년 ○○○○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	15.10.13	2회	○○○○ ○○	190,000,000	15.11.11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5	○○	○○○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	14.04.21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	329,210,000	14.07.02	○○과	○○○		
6	○○	○○지구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	15.10.27	4회	사단법인 ○○○○ ○○○	85,869,700	16.01.25	○○과	○○○		
					(주)○○○ ○○○	36,801,300					
7	○○	○○군 CS 내재화 교육 및 품질관리 용역	16.02.18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 ○○	93,000,000	16.04.22	○○과	○○○		
8	○○	○○군 통합상수도 운영 기술지원용역	16.05.31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	140,300,000	16.07.08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9	○○	○○○○○○○○ [○○○○○○] 전시물 제작 설치	14.06.19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	260,000,000	14.08.25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10	○○	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	15.04.14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	105,600,000	15.06.04	○○○○ 과	○○○		
11	○○	○○군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	15.09.11	2회	(주)○○○ ○○○	190,000,000	15.11.20	○○○○ 실	○○○		

조치할 사항 횡성군수,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양구군수, 인제군수는

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,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